

#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## 시 정 요 구

제 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구, ○구, ○○군

내 용

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(이하 “대체산림자원조성비”라 한다)을 미리 내야 한다.

다만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, 산지일시사용허가(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)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: 20일 이상 30일 이내</li><li>2.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: 30일 이상 60일 이내</li><li>3.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: 60일 이상 90일 이내</li></ol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·납부기한·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.

그러나 울산광역시 ○구청은 [붙임]과 같이 ○○○의 공동주택(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)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826,99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발부(납부기한 2018. 2. 7.)하였는데도, 2018. 2. 26. 감사일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다.

울산광역시 ○구청은 [붙임]과 같이 (주)○○관광의 차고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,328,000원을 개발행위허가(2016. 4. 29.) 후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도, 사업이 완료(2017. 11. 13. 복구 준공)될 때 까지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2건(인·허가 통지 후 6개월~1년 9개월 경과) 30,835,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있다.

울산광역시 ○○군은 아래 표와 같이 ○○테크의 공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8,366,21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발부(납부기한 2008.11.20.)하였는데도, 2018. 2. 26. 감사일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는 등 총 6건(연번 1~6) 80,238,330원이 납부(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~9년 3개월 경과)되지 않고 있으며,

또한 [붙임]과 같이 ○○○의 단독주택 진입로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49,130원을 개발행위허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 개발행위허가(2017. 8. 3.)되었는데도, 미착공이라는 사유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등 총 15건(연번 7~21) 110,168,38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(인·허가 통지 후 2개월~3년 2개월 경과)하지 않고 있다.

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   울산광역시 ○구청장, ○구청장, ○○군수는

[시정]    미납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27,068,700원(○구청 5,826,990원, ○구청 30,835,000원, ○○군 190,406,710원)을 징수하고,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